

봄무(5천톤) 정부수매 사전 규격 공개

1. 구매사항

- 구매건명 : 국내산 봄무 정부수매
- 발주기관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
- 구매품목
 - 노지 봄무 : 5,000톤(250,000박스×20kg)
 - * 입찰자당 최저 300톤, 최대 1,000톤 내에서 100톤 단위 입찰
 - 구매규격 : 박스당 20kg 내외(무 9~10개, 개당 평균 2.0kg 내외)
 - 구매조건 : 직상장 시 팔렛타이징 및 랩핑 조건
- 납품기간 : '24. 6. 10(월) ~ 6. 28(금)
 - * 기간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수매 산지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구매방법 : 공개경쟁입찰(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낙찰)
 - 입찰참가자격 : 무 재배포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산지유통인 등
 - 입찰단가 : 규격(박스) 당 낙찰단가
 - * 물품대, 수확작업비 및 상처비, 포장재비, 운송비 등 수확 포전에서 공사 지정지 (공사비축기지, 민간 보관창고, 도매시장 등) 인도 시까지의 모든 제반 비용 포함
 - 입찰일자 : '24. 6. 4(화)
- 담당자 : 061-931-1071, 1076, 1079

2. 규격 공개사항

가. 품목 및 규격

품목	수매규격(중량)	품위규격	포장재 규격	표시방법
노지 복무	박스당 20kg 내외 (9~10개, 개당 평균 2.0kg 내외)	〈붙임 1〉 참조	〈붙임 2〉 참조	〈붙임 3〉 참조

나. 품위검사 및 안전성검사

☐ 품위검사

- 공사 담당자(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)가 포전 품위검사 및 최종 품위 검사를 통해 인수여부 결정

☐ 안전성검사

- 검사항목 : 잔류 농약 463종 및 중금속 2종(납, 카드뮴)
 - * 잔류허용기준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공전)」(식약처 고시)에 따름
- 수매대상 포전에서 샘플 채취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

3. 기타사항

- 공사에 장기연체(1년 이상)가 있는자는 참가할 수 없음
- 본 사전규격 공개안 외의 내용은 본 입찰공고 참고 및 담당자 문의

- 붙임 : 1. 정부수매비축 무 품위규격 1부
2. 정부수매비축 무 포장재 규격 1부
3. 정부수매비축 무 표시방법 1부

붙임 1 정부수매비축 무 품위규격

※ 참고 : 농산물 표준규격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-12호('23.11.23)
별첨. '농산물 표준규격' 준용

1. 품위규격

- 가. 날개고르기 : 9~10개/박스(20kg 내외)이며, 개당 평균 2.0kg 내외
- 나. 모양 :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
- 다. 신선도 : 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
- 라. 잎 : 제거할 것
- 마. 중결점 : 없는 것
- 바. 경결점 : 없는 것

2. 기타조건

- 가. 동일품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고 있는 것
- 나. 절단상태 및 뿌리상태가 양호하며 냉해, 추대, 바람들이 등의 병해충 피해가 없는 것

< 용어의 정의 >

-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 - ㉠ 부패·변질 :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
 - ㉡ 병해, 충해,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
 - ㉢ 형상불량 : 부러진 것, 심하게 굵은 것,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, 쪼개진것, 바람들이가 있는 것, 추대된 것
 - ㉣ 기타 :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
-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 - ㉠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
 - ㉡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
 - 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

붙임 2 **정부수매비축 무 포장재 규격**

※ 참고 : 농산물 표준규격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-12호('23.11.23)

별표 3. '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' 준용

1.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

2. 포장재 규격 : 도매시장 상장용 박스

- 아래의 박스지종에 상당한 규격의 박스

* 박스지종 : KLB225.CK.K.CK.KLB225(BA), 이면(내부)코팅

* 지종은 KLB 상당의 규격으로 색은 무관

붙임 3 정부수매비축 무 표시방법

※ 참고 : 농산물 표준규격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-12호('23.11.23)
별표 4. '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' 준용

1. 표시사항

가. 의무표시 사항

- 1) “표준규격품” 문구
- 2) 품목
- 3) 산지 : 산지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(원산지의 표시기준) 제1항의 국산농산물 표기에 따른다.
- 4) 등급
- 5) 무게 또는 개수
- 6) 생산자(생산농가) 또는 생산자단체, 산지유통법인의 명칭 및 전화번호

2 표시방법

가.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, 생산자(생산농가) 또는 생산자단체, 산지 유통법인의 명칭 및 전화번호, 권장표시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.

나.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.

다. 표시양식(예시)

표 준 규 격 품					
품 목	신선무	등 급		생산자(생산자단체)	
품 종		무 계 (개 수)	kg (개)	이름	
산 지	국내산			연락처	

※ 1. 글자크기 : 20포인트 이상(포장 면적이 3,000cm² 이상)

2. 포장재 중앙에 인쇄하여 부착

라. 글자 및 양식의 크기, 임의 구성항목 상품특성,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aT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.